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권영진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4722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4. 10. 16.

발 의 자 : 권영진 · 김상훈 · 이만희  
서천호 · 김승수 · 우재준  
조승환 · 엄태영 · 강대식  
인요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·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, 토지 등을 수용·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함(안 별표 제2호(96)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4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

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2호에 (96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96)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